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66호 2017. 9. 26(화)

# 포항시보

## ◀ 입법예고 ▶

-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제2017 - 95호) .....2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7 - 96호) .....7

## ◀ 공 고 ▶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제2017 - 1346호)..... 16

회								
람								

##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17-95호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0.

**포항시장**

#### 1. 조례명

-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그 밖에 포항시장 또는 포항 남·북부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하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함
- 나.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외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전화: 054-270-3335, fax 054-270-3340, E-mail [hjkk@korea.kr](mailto:hjkk@korea.kr))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http://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포항 남·북부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3조(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공고 제2017 - 96호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포항시장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법령 근거를 변경함(안 제1조, 제7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 제50조(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7조)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일부 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 신설(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3.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4. 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전화 054)270-2513, FAX 054)270-2520, E-mail miso59@korea.kr

##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을 “회계관계공무원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채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재정보증 기간”을 “재정보증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를 “회계관계공무원에”로 한다.

제6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곧”을 “지체 없이”로, “통지하고 당해”를 “알리고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  
 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 관리한다”를 “보관·관리한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p>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b>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관, <u>경리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채무관리관</u>,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li> <li>2. 제1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u>시장이</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li> </ol>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b> ----- 회계관계공무원이란 ----- 사람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재무관</u>----- 부채관리관 -----</li> <li>2. <u>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b>제3조(재정보증) ① ~ ② (생략)</b></p> <p>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p> <p>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u>재정보증기간을</u>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p>	<p><b>제3조(재정보증) ① ~ ② (현행과 같음)</b></p> <p>③----- <u>따른</u> -----</p> <p>④-----</p> <p>----- <u>재정보증 기간</u>-----</p>
<p>&lt;신 설&gt;</p>	<p><b>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b> 제3조에</p>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  
공무원에 -----

**제6조(보험료의 지급)** ----- 회계  
관계공무원-----  
----- 해당 연도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그 밖에 --  
-----  
--- 지체 없이 -----  
알리고 해당 -----  
-----

② 제1항에 따라 -----  
----- 해당 -----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회계관계공무원-----  
 -----  
 -----  
 ----- 그 밖에 -----  
 -----

②-----  
 ----- 보관 ·  
관리한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7 - 134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 09. 26.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역의 종류	소 재 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재해방지 보호구역	포항	송라	화진	449-7	1987.04.18	2,285	2,285	포항시 (영일군)	리도 203호선 개설공사	
재해방지 보호구역	포항	송라	화진	449-9	1987.04.18	353	353	포항시 (영일군)	리도 203호선 개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해제 예정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포항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234, 팩스 054-270-3519)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산림보호구역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